



명쾌한 수다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따라 회사 돈을 횡령하고도 무죄일까요?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따라 회사 돈을 횡령하고도 무죄일까요? 오늘의 명쾌한 수다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횡령죄의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피해 회사의 자회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 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분과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무엇일까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탈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리입니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회사의 법인격 인정에 따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박탈하여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대원칙을 부인합니다.

그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관례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 977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에 관하여 관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

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乙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

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정리하자면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고,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